

■ 최신 판례 ■

[조세]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

임승혁 공인회계사 | 김혜영 변호사

1. 사실관계

甲회사는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가공매출액을 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다가 그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에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으나, 과세관청이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함으로써 그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게 됨.

甲회사는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증액경정으로 인하여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,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"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"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함.

2. 쟁점

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분식결산을 통한 법인세 과다신고를 하였다가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분식결산을 통해 법인세 과소신고를 하였는데, 과세관청이 그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, 그러한 사정이 법인세 과다신고를 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

3. 판시사항

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다가, 위와 같은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부터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손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 과소계상한 수익을 익금산입하거나 과다계상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증액경정함으로써 그 특정 사업연도에서 이루어진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,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조치로 인하여 그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후발적인 변동이 생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의하여 적법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,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의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.

4. 해설

본건에서는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분식결산을 통한 법인세 과다신고를 하였다가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분식결산을 통해 법인세 과소신고를 하였는데, 과세관청이 그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, 그러한 사정이 법인세 과다신고를 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.

대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조치로 인하여 그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본 대법원 판결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분식결산의 효과를 서로 상쇄시킬 필요성은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.

5. 다운로드 :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1두16971 판결